

감정평가서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동욱
건명	김사랑 소유물건(2025타경512474)
감정서번호	HS0330-250925-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현산

HYUNSAN APPRAISAL CO., LTD.

[본사] 서울 서초구 양재천로13길 24 원진빌딩 4층 / TEL.02-837-3040 FAX.02-837-2044

[경기지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50 신강빌딩 3층 / TEL.031-689-3160 FAX.0505-182-4231

[경인지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사로 71 에이동 405호 / TEL.032-715-8288 FAX.0505-182-4232



(주)감정평가법인 현산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송광용

송광용

(주)감정평가법인 현산 경인지사 지사장 한광희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일억육천팔백만원정(W168,000,000.-)					
의뢰인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한동욱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인천지방법원 경매19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사랑 (2025타경512474)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표 시 근 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9.26	2025.09.26	2025.09.26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하	1세대 여	- 백	168,000,000
	합계					₩168,000,0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한광희		한광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부평동 459-1 원아그랜드빌 제5층 제502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2025타경512474)목적에 위한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형상, 이용상황, 공법상 제한 등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 등]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9-1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154번길 14		
	건물명	원아그랜드빌		
	주용도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규모	지하0층/지상5층		
	용도지역 및 기타 공법상 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일	2002-03-08		
기호	층, 호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대지권면적 (㎡)
1(가)	제5층 제502호	57.04	5.37	21.3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09.26일임.
- 본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09.26일이며 대상물건의 위치, 이용상황, 개별적 특성 등을 실지조사 하였음.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5.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주된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2) 다른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의 특성상 거래사례비교법 외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시산가액 조정 및 합리성 검토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는 생략하되, 동 유형 구분건물의 가격수준, 임대수준, 평가사례, 거래사례, 기타 가격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일괄·구분·부분 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본건은 구분소유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건물과 토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을 일괄하여 평가하되, 귀 원의 요청에 따라 건물과 토지가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였음.

6.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하였음.

나. 본건의 명세표 상 토지·건물의 배분가액은 집합건물의 구분 평가 시 「토지·건물의 배분 비율표(한국부동산 연구원)」의 배분비율 및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나, 지역 및 개별 사정 등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본건에 대한 현장조사 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귀 제시목록 및 건축물현황도 등을 종합 참작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 바라며 경매응찰시 내부 및 이용관리상태를 재확인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산출개요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선정한 후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비준가액)을 산출하였음.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분	소재지	지번	건물명	층, 호	전유면적 (㎡)	거래금액 (원)	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부평동	11*-*	우정***	제2층 제20*호	49.77	150,000,000	3,013,863	2025-04-10	2002-01-11
2	부평동	45*-*	-	제4층 제40*호	59.79	153,000,000	2,558,956	2025-04-24	2000-10-27

나.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의 유사성이 인정되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 (1)을(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사정보정

보정치 결정의견	보정치
비교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요인 없음.	1.000

4. 시점수정

본건 시점수정을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발표하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인천)를 적용하였음.

지역	산정기간	산출내역	시점수정치
인천	2025.04.10 ~ 2025.09.26	거래시점 : 2025.04.10, 2025년03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9.26, 2025년08월 지수를 적용 함 2025.04.1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3월) : 100.0 2025.09.26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8월) : 99.5 시점수정치 : $99.5/100.0 \approx 0.99500$	0.99500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가치형성요인	세부항목
단지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단지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 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 주출입구와의 거리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구분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비교치
기호 1(가) ----- 거래사례 (1)	1.000	1.000	0.980	1.000	0.980
	- 단지외부요인 : 본건은 사례 대비 유사함. - 단지내부요인 : 본건은 사례 대비 유사함. - 호별요인 : 본건은 사례 대비 전유면적 및 대지권 등 열세함. - 기타요인 : 본건은 사례 대비 유사함.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비준가액) 결정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요인	전유면적 (㎡)	산출가액(원)	시산가액(원)
							단가(원/㎡)
1 (가)	3,013,863	1.000	0.99500	0.980	57.04	167,630,168	168,000,000
							@2,945,302

※ 시산가액은 반올림하여 유효숫자 3자리까지 표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감정평가액의 결정의견

1. 가격참고자료

가.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구분	소재지	지번	건물명	층, 호	전유면적(㎡)	평가금액(원)	단가(원)	기준시점	목적
1	부평동	11*-3*	광미***	2층 20*호	56.89	166,000,000	2,917,912	2025-03-26	법원경매
2	부평동	14*-*	광명***	2층 20*호	46.42	160,000,000	3,446,790	2025-01-07	법원경매

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층별 및 위치별, 내부상황에 따라 가격편차는 있으나 동 유형의 구분건물은 전유면적당 3,000,000원/㎡ 내외 수준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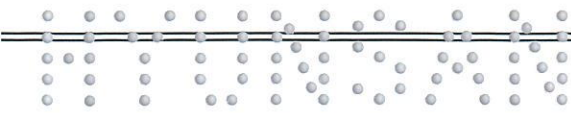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에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전유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1(가)	57.04	168,000,000	제5층 제502호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9-1 원아 그랜드빌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 154번길 14			1층	114.62			
				2층~5층 (각 면적 동일)	124.48			
	동 소	459-1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5층 제502호	209.2			
			1. 소유권 ----- 대지권	21.32 209.2x----- 209.2		57.04 21.32	168,000,000	비준가액
	합 계		이 하	여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100,800,000 67,200,000 ₩168,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남서측 근거리에 인천1호선, 1호선"부평역"이 소재하고 있음.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4.05.21.)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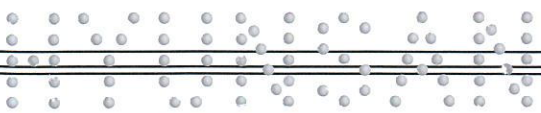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임차권 등기사항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참고하시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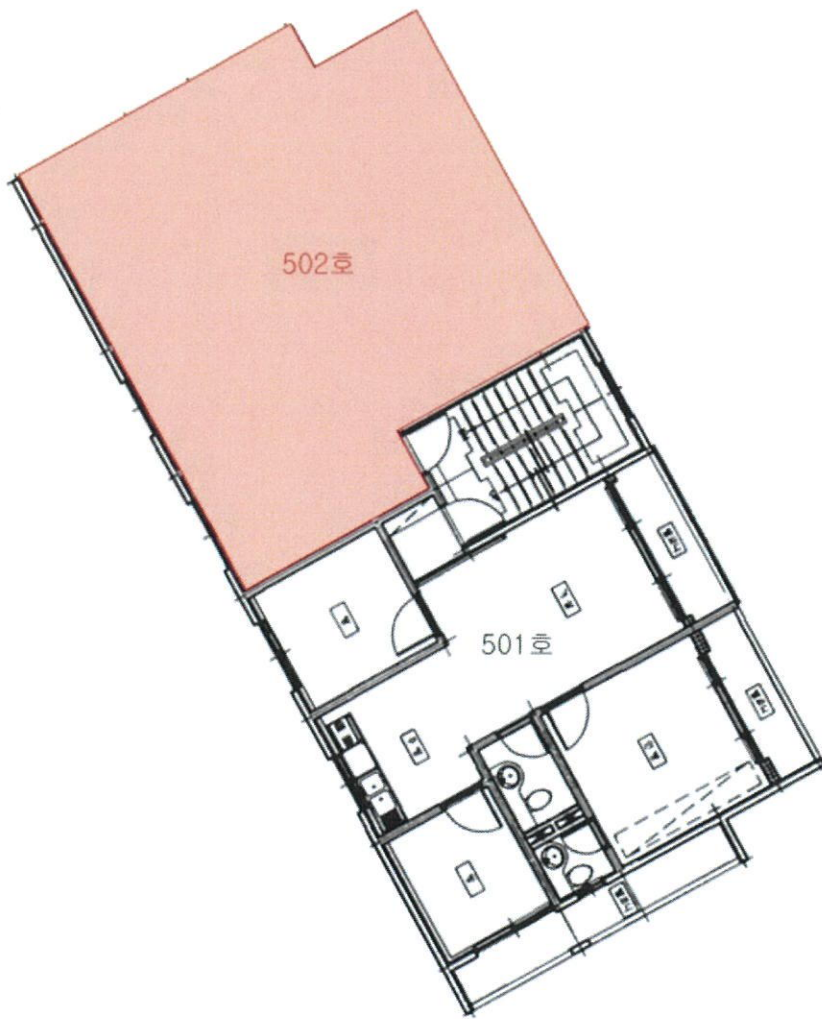
광역위치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9-1 원아그랜드빌 제5층 제502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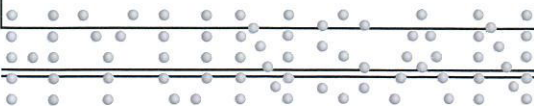


건물개황도



<호별배치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9-1 원아그랜드빌 제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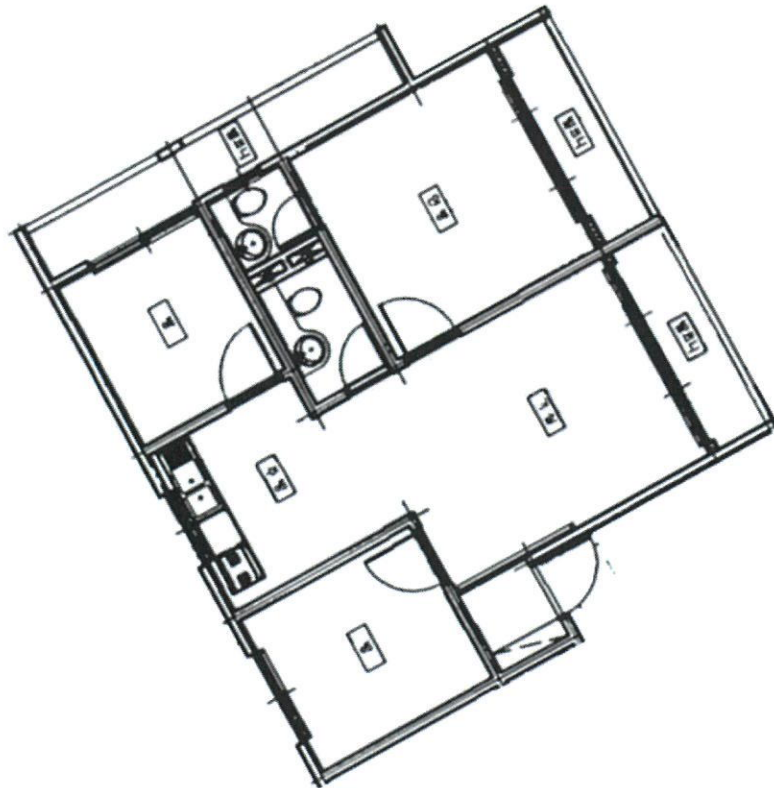


내 부 구조 도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9-1 원아그랜드빌 제5층 제502호



<내 부 구조 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59-1 원아그랜드빌 제5층 제502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주출입구

사 진 용 지



본건 현관



본건 및 주위환경